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18. 4. 23.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지점의 준법감시인력 전문성 강화

현지 감독당국이 ◇◇지점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지점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의 인적자원 등에 대한 통제 강화를 반복 지적하고 있음에도, 지점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 및 준법감시업무 경험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점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 업무 및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AML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점검 강화

◇◇지점의 신규 거래모니터링시스템 적용전에 본점 데이터와의 매핑 결합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본점에서도 시스템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시스템 검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수행 관련 업무처리 절차 운영 불합리

영업점에서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시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 처리 단계를 구체화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시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의 항목을 '기타'로 선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설립목적 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확인 업무 수행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은 필수 확인사항이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대한 전산 입력 분류를 보다 다양화하고, '기타'로 기재시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확인 업무 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3)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절차 불합리

영업점 의심경보 발생 거래와 관련하여 영업점 미보고 처리건에 대한 본점의 재검토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4)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평가 업무 운영 불합리

◇◇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무역금융거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평가시 관련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